

도 기 영 |

법무법인 국민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 이사,
 강동구상공회 이사, 성남시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국제공의법률상담소 자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협력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실사위원회 간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서울중랑경찰서 보안협력위원
 tel. 02-470-8812 | viplawyer@hanmail.net | www.kookminlaw.com

환경분쟁조정사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판례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판결(사건번호 2000가합6945)

사건의 개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고강동, 김포시 고촌면 주민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 내 제2활주로를 설치하면서 배후지를 확보하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와 항공기의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거나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항공기 소음, 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 한국공항공사는 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자

항공법에 의해 활주로 설치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업무(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함한다) 등 김포공항의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이다.

(2)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규정한 영조물(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면서 이용자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수인한도(위법성)

항공기에 의해 발생한 소음의 정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과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와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거주지역과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항공법에 의한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와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피해

지역 토지이용의 특수성,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포공항 주변에서 85웨클 이상의 소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위법성이 있다. 85웨클은 72데시벨 정도에 해당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 중 공업 지역의 주간소음도 70데시벨보다 높은 수치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의 소음기준치는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니고 환경정책과 규제를 위한 공법상 기준이므로 이 기준의 위반이 곧바로 사법상의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주체로서 85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국가와 한국공항공사의 주장과 판단

(1) 영조물 설치·관리의 무과실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이상 항공기 소음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소음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항공법 등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이용과 관련한 위험성의 존재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항공법에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의무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책이 불만족스러워도 보충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소음방지대책이 임의적인 점, 많은 주민들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시기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이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에는 대부분 소음방지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점,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예산이라는 요소로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의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은 방음 시설이 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실내를 밀폐했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의 설치·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소음방지대책의 시행이 위자료의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험에의 접근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 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 후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감수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이들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또는 선주성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993. 6. 21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 예상 지역으로 지정·고시 후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전입했다는 등의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임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거나 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해사실의 입증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는 주민 개개인의 생활조건이 달라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내용과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대화방해, TV 시청장애, 독서방해 등의 피해가 개개인에게 실제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고통없는 평온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개개인의 생활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과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과 생활방해도 주요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위에 열거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주민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소음정도와 거주기간을 참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배상기간

수인한도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거주기간 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 기간 중 개인별 거주기간을 배상기간으로 한다.

(2) 배상수준

위 자료는 항공기 소음의 정도와 소음구역 설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종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5만원, 제3종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3만원으로 한다.

결 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측에서 피고인 가해자의 특정과 고의·과실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고, 별도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 운항패턴, 운항횟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공항 혹은 비행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항공기 운항 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80웨클 내지 85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기구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 이상이 될 때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은 대체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90웨클 미만은 월·금 30,000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금 50,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은 월·금 60,000원을 적정한 배상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 금액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